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병 수*

국 | 문 | 요 | 약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서 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무엇이 '기본적 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인지 그리고 '소홀히'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아동방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아동방임사건인지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방임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방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아동복지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무엇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보호, 양육, 치료 그리고 교육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들의 형벌을 감소하고 행위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방임의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방임 판단기준과 개입기준을 시민과 학자 그리고 실무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여 학대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3.31.1.237>.

❖ 주제어 : 아동방임, 아동학대, 명확성의 원칙, 형벌 포폴리즘, 아동학대 매뉴얼의 개발, 아동복지법

*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법학박사.

I. 문제의 제기

최근 15개월 된 아픈 딸을 방임 속에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김치통에 2년 넘게 보관한 부모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다.¹⁾ 정인이 사건²⁾을 비롯하여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 모든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고자 ‘아동복지법’³⁾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⁴⁾이 제정되고 피해아동의 이름을 딴 법률안들⁵⁾이 만들어지고 있어도 아동학대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고 많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야기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방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홀히’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아동방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아동방임사건에 대처하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이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 법을 적용하고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명확한 법률을 보완할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대처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생

1) ‘15개월 딸 방치 사망, 시신은 김치통에 은폐’ 친부모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2. 12. 29.

출처: <https://v.daum.net/v/20221229182302798>

2) 2020년 서울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023년 1월 20일 위키백과사전 참조.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9D%B8%EC%9D%B4_%EC%82%AC%EA%B1%B4

3)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4)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

5) 소위 ‘정인이법’이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1호)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안된 의안들이 57여개나 된다.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1월 20일 방문.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명의 위협에 처한 학대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지체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 아동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인이 사건도 세차레나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⁶⁾ 게다가 일반인들에게 충격적인 아동에 대한 성학대나 신체학대에 비해 방임행위는 무엇이 방임인지, 방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과 관심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Ⅱ)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Ⅲ).

Ⅱ.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

1. 아동학대에서 방임행위의 중대성 간과

〈표 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⁷⁾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30,905
중복	5,347	8,980	10,875	11,792	14,476	14,934
신체	1,884	2,715	3,285	3,436	4,179	3,807
정서	2,046	3,588	4,728	5,862	7,622	8,732
성	428	493	692	910	883	695
방임	2,010	2,924	2,787	2,604	2,885	2,737

아동방임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

6) 뉴스1, 2021년 2월10일, “경찰, ‘정인이 사건’ 출동 경찰관 5명 전원 중징계”,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208739>

7)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1년 8월 31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7066

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다. 최근 발생한 15개월 된 딸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숨지게 방치한 경우가 방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유형을 보여주는 <표 1>에서처럼 다른 아동학대행위의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아동방임도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방임은 일반인들에게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들보다 덜 관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신체학대처럼 눈에 띄는 상처나 멍 등이 아동방임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방임행위의 결과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방임사건이 발생하여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론에서도 잘 보도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문가들조차 다른 아동학대유형들보다 아동방임에 덜 관심을 가져왔다.⁸⁾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반면, 아동방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져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낮은 편이다.⁹⁾

그러나 아동방임은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아동의 초기 뇌 성장에 방임행위가 신체학대나 성학대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또한 아동방임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신체적 손상여부를 학대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보며¹²⁾ 신체적 학대는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한데 비해 신체적 손상이 없는 아동방임

8) Erickson, M. F. & Egeland, B.(2002) Child neglect, In J. E. B. Myers, L., Berliner, J. Briere, C. T. Hendrix, C. Jenny, & T. A. Rie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rd ed., pp.3-20), Thousand Oaks. CA: Sage.

9) 예비 신고의무자(대학생)가 인식하는 심각도 수준을 아동학대 행위유형으로 보면,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순이다. 정선영·박보은, “예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대현황과의 차이”, 아동과 권리 제23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9, 53면.

10) Garbarino, J., & Collins, C. C.(1999). Child neglect: The family with a hole in the middle. In H. Dubowitz(Ed.), Neglected children: Research, practice and policy(pp.1-23), Thousand Oaks. CA: Sage.

11) Hildyard & Wolfe(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 679-695.

12) 이세원,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은 벌금형을 주로 선고하여 왔다.¹³⁾ 이것은 대법원이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를 아동방임보다 결과불법의 차원에서 중하게 보기 때문이다.¹⁴⁾

〈표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¹⁵⁾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망자 수	16	36	38	28	42	43

2. 아동방임범죄의 법률적 문제점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행위의 객관적 기준의 부족

우리 사회가 방임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동방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인들은 아동방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아동방임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즉 아동방임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으로는 실제 아동방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아동학대사건인지 분별하기 곤란하다. 이것은 현행법의 아동방임규정은 아동방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동방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은 2005년 11월에 발생한 ‘의왕시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 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이혼한 부모 때문에 외가에 맡겨졌으나, 외조부마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바람에 혼자서 비닐하우스에 살던 초등학교생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1호, 2019, 80면.

13) 이세원,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1호, 2019, 73면.

14) 김슬기,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21, 14면 참조.

15)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1년 8월 31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 T_SEQ=367066

숨겨있는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의 심각성과 함께 양육·보호의 최소 기준이 무엇이며, 아동방임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시행 2000. 7. 13.)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으로 규정된 것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¹⁶⁾ 하지만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범죄구성요건 행위로서 너무 추상적이다. 즉 무엇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보호·양육·치료·교육’을 방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마다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양육태도가 다른데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법기술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포함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을 위임하여 형벌권의 범위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방임

16)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방임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2017)의 ‘아동 분야 사업안내’에서 겨우 살펴볼 수 있다.¹⁷⁾ 이처럼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아동방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내용을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시행령도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¹⁸⁾ 또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의미 이해가능성”¹⁹⁾을 벗어나는 것으로 일반인 또는 보통인으로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를 예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나. ‘소홀히’의 모호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모호하다. 그러나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와 아동복지법의 아동유기죄가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동방임죄도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소홀히’라는 문언에 치중하면,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들(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과 달리 방임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 보는 볼 수도 있다.²⁰⁾ 이처럼 아동방임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본다면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작위의무의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고 부작위행위 그 자체의 불법이 현저해야 입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동방임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방임행위에 포섭되는 상황이 다양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진정부작위범 형식의 현행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규정은 입법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²¹⁾ 즉 아동의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또는 해를

17) 보건복지부.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 2017, 197-198면.

1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 6844 판결.

19) 헌법재판소 1992. 9.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20)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0, 51면.

21)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통권 제45호: 2015.4), 150면.

끼칠 적극적인 의도에서 ‘소홀히’ 한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부주의함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것인지, 현행 아동복지법상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소홀히’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 그 ‘소홀’의 정도에 따라 그 상황이 다양해질 수 있다. 생활습관이나 양육방식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소홀히’의 상황은 다양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단순히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대강의 보호만을 하는 경우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의식주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거나 의료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아동복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임행위에 포섭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홀히’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²²⁾

다. 형벌가중화의 문제점

‘칠곡계모사건’²³⁾과 ‘평택 원영이사건’²⁴⁾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아동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22) 김민성, “아동학대범죄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에 관한 검토”,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3면.

23)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붓어머니 임씨가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최근 영화 <어린 의뢰인>으로 만들어졌다. 오마이뉴스, 2019. 5. 31.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4119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4)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피해자 신원영(당시 7세)이 계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하고, 시신이 야산에 암매장된 사건이다. 암매장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피해자를 찾기 위해 실종 경보가 내려지면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이름을 따 원영이 사건 또는 신원영 사건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83%9D_%EC%95%84%EB%8F%99_%EC%82%B4%ED%95%B4_%EC%95%94%EB%A7%A4%EC%9E%A5_%EC%82%AC%EA%B1%B4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²⁵⁾ 형법상 학대와 유기의 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²⁶⁾ 그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방임행위는 형법상 학대와 유기에 관한 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73조 제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71조 제1항).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형법 이론적으로 방임행위는 통상 작위보다는 불법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소극적 부작위행위가 많은데 적극적인 학대나 유기에 비해 소극적인 방임행위를 학대나 유기보다 가중처벌하거나 학대나 유기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벌로만 규율하고 있다는 데 있다.²⁷⁾ 이는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아동을 신체적·

25)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41호로 제정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24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4925호, 시행 2018. 4. 25.)으로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였다.

26) 이 법은 아동을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7)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유기하고, 방임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피해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만 하거나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친권상실 선고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영구히 분리시키는 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처벌도 마찬가지다.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도 있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그런 섬세한 구분법을 알지 못한다. 전부 일률적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이는 아동복지법이 형벌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형벌만능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대중의 여론에 떠밀려 정치인들이 곧바로 반응하는 형벌포퓰리즘(Penal Populism)²⁹⁾의 모습을 아동복지법이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학대행위에 형벌로만 대처하는 아동복지법에 비해 아동학대처벌법은 형벌과 수강

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8) 권술지·이경주·김희균, “아동학대 판단척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9호 (2018·6), 286-287면.

29) 송문호, “보안처분과 형벌 포퓰리즘”, 형사법연구 제26권 3호, 2014, 119면.

명령(제8조), 친권상실청구(제9조), 보호처분(제27조), 과태료(제63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심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의 형평성에 의구심을 주고 있다.³⁰⁾

3. 실무상 문제점: 매뉴얼의 부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방임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인지 그리고 ‘소홀히’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들인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방임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 규정만으로는 아동학대사건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규정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을 발견하고 신고하여야 할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³¹⁾ 또한 아동학대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복지관련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사건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과 대처를 어렵게 한다.³²⁾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아동학대와 달리 아동방임은 보호자가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인지 방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아동방임행위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의도적이기보다는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³³⁾ 그래서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사회적·법적 개입이 가능한 방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례가 방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들도 기관마다 방임 판정의 기준에 조

30) 권술지·이경주·김희균, 앞의 논문, 296-298면 참조; 강동욱,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4호, 2020, 459면.

31) 關東辯護士連合会編, 「子どもの虐待-その豫防と救済のための提言-」, 關東辯護士連合会, 1998, 27면; 아동학대를 인지하였더라도 학대사실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 신변보호에 대한 우려, 착오에 의한 허위신고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2)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2권 1호(2014.4), 203면.

33) Erickson, M. F. & Egeland, B.(2011) Child neglect, J. E. B. Myers (Ed.).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3rd ed.)(pp.103-124), Thousand Oaks, CA: Sage.

금씩 차이가 있는 등 일선 실무자들이 개입의 첫걸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³⁴⁾에서는 응급조치의 대상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위험이 있거나 학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요건을 학대현장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로 확대한 것은 학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사전에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³⁵⁾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위기에 처한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인데 현행법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4)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35) 강동욱,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4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20.12., 105-106면.

Ⅲ. 개선방안

1. 법적 개선방안

가. 구체적인 아동방임행위의 유형을 아동복지법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제시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서 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무엇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인지 그리고 ‘소홀히’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아동방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아동방임사건인지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방임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방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아동복지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³⁶⁾ 하지만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³⁷⁾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금지되는 방임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을 위임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형벌법규에 대한 일반인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의 방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열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방임행위에 관한 유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매뉴얼은 방임의 수준을 아동에게 가해지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가벼운 수준(mild), 중간 수준(moderate), 심각한 수준(severe)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방임의 유형도 신체적 방임(방치), 의료적 방임, 부적절한 보호(감독), 환경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신생아 약물 중독(혹은 노출) 등으로 더욱 포괄적이며 세부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³⁸⁾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이와 유사한 방임행위

36) 김혜정·박미숙·안경옥·원혜옥·이인영, 형법총론(제2판), 피앤씨미디어, 2019, 19면.

37) 대법원 2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38) DePanfilis, D. (2006). Child Neglect: A Guide for Preven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분야 사업안내’(2017)를 살펴보면 방임의 유형을 유기, 기본적 의식주의 물리적 방임, 양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 및 의료적 방임 등으로 나누고 있다. 물리적 방임에는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외에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며, 교육적 방임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일 이상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의료적 방임에는 ‘필요한 의료적 처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³⁹⁾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통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기본적’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방임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교육이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본적 교육을 방임하는 유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의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방임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구체적 기준을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매뉴얼은 구체적 행위, 장소, 아동의 연령 등을 법규에 규정함으로써 -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 안에(장소) 만 7세 미만(연령)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행위)하였을 경우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방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만 14세 미만), 메릴랜드주(만 8세 미만) 및 오리건주(만 10세 미만) 등에서는 방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치를 불허하는 아동 연령을 명기함 - 더욱 명확한 아동방임의 인식과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무엇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보호, 양육, 치료 그리고 교육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pp.9-16.

39)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neglect.pdf>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아동학대 유형 및 구체적 행위. pp.197-198.

40)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homealone.pdf>에서 2017. 9. 30. 인용.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Leaving your child home alone.

가 포함되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부적 유형의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면 현행법상 방임행위에 대한 정의에서 제시할 수 없는 ‘소홀’함의 범주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동방임행위의 정의에서 ‘소홀히’를 삭제하는 방안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소홀히’라는 모호한 개념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또는 해를 끼칠 적극적인 의도에서 ‘소홀히’ 한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부주의함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부주의함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것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임을 “보호자(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위해 건강, 교육, 정서적 발달, 영양, 주거 및 안전한 주거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함이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방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의하였으며,⁴¹⁾ 유니세프(UNICEF)는 “방임은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며, 아동을 위해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에 실패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⁴²⁾ WHO의 방임 정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가 방임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되므로 방임 판단에서 보호자(부모)의 고의성을 살피도록 하며, 유니세프는 아동 발달의 영역을 영적 또는 도덕적 영역까지로 확장하여 문화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아동 발달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방임행위의 결과로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 즉 위험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도 방임행위의 고의성과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여성이 남성

41)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p.60.

42) UNICEF. (2012).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p.5.

이 송금하는 양육비 명목의 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동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여 아동이 질병에 걸리고 중퇴나 상급학교 진학포기 등의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방임죄로 판단하였고⁴³⁾ 부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녀의 도움요청을 묵살하여 떠돌게 하고, 충격적 언사로 자녀가 자살시도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방임 및 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⁴⁴⁾ 방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고의에 의한 방임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행위의 고의성이 강하거나 이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명백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주의에 의한 소홀함으로 인해 아동이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방임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상해죄로 적용하고 있어 과실에 의한 소홀함은 방임죄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동방임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와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방임행위의 고의성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보호자(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관한 정의도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능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하지 않는 방임행위’로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구체적 유형들을 예시하면 방임행위의 구성요건에서 ‘소홀히’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삭제할 수 있을 것이고 고의에 의한 방임행위만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조치를 할 경제적 능력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 구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아동방임행위가 됨으로써 아동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 입법적 제안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호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43)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 12. 3. 선고 2013노1111 판결, 참조.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2619 판결, 참조.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적 학대’란 나. ‘정신적 학대’란 다. ‘성적 학대’란 라. ‘방임’이란 부모나 아동을 돌볼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등의 조치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연구의 범위상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는 구체적 설명을 생략함.

아동복지법의 방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열거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아동학대의 판단기준)를 신설하여,

제3조의2(아동학대의 판단기준) ① ‘신체적 학대’는

② ‘정신적 학대’는

③ ‘성적 학대’는

④ ‘방임’은 유기, 기본적 의식주의 물리적 방임, 양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 및 의료적 방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방임에는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외에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며, 교육적 방임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일 이상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의료적 방임에는 ‘필요한 의료적 처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

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조치를 할 경제적 능력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 구호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라. 방임행위에 대한 형벌 감소와 형벌의 다양화 모색

형벌은 현행법상의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형벌은 가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근대 형사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몇몇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분위기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러한 여론은 반영한 것이 아동복지법상의 처벌규정이다.⁴⁵⁾ 이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방임행위는 형법상 학대와 유기에 관한 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적극적인 작위보다 상당수가 소극적 부작위인 방임행위를 적극적 작위행위인 학대나 유기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방임행위는 그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은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벌로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형벌만능주의 또는 형벌포퍽리즘(Penal Populism)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들의 형벌을 감소하고 행위유형에 따라 다양한 제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의 금지행위⁴⁶⁾ 중에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45)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21권 1호(2014), 466면.

46)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유기 및 방임행위(6호)와 함께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8호)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기와 신체적 학대행위(3호), 정서적 학대행위(5호)는 제71조 제1항 2호에 그대로 두고 방임행위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8호)는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넣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임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방임행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과 벌금 이외에 제재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임행위의 종류에 따른 제재수단의 다양화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경미할 경우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손에 화상을 입어 치료하지 않을 경우 손이 오그라들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도 교사가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이런 방임행위를 한 교사에게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단계별 취업제한의 설정

(구)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 등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⁴⁷⁾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2018년 6월 28일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7)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즉,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구)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⁴⁸⁾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에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있다.⁴⁹⁾ 하지만 위헌결정 후 변경된 아동복지법과 부칙에서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고 부칙 제3조에 의해 범행의 경중만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3년, 5년, 10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부칙 제3조).⁵⁰⁾ 조속히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요건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 6. 28. 2017헌마130·405·989(병합)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일부개정]

50) 부칙 [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제3조(중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중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와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개선방안

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표준적 매뉴얼 개발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아동학대와 달리 아동방임은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양육과 보호를 하지 않는 부작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육인지 방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아동방임행위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의도적이기보다는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다.⁵¹⁾ 그래서 아동관련기관의 종사자들조차도 어디서부터 사회적·법적 개입이 가능한 방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례가 방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들도 기관마다 방임 판정의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등 일선 실무자들이 개입의 첫걸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임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치료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임의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의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성적 방임은 아동의 연령, 지속기간, 횟수에 상관없이 사회적·법적 개입에 들어가야 한다. 낮은 수준의 방임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수준의 방임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중간수준의 방임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부모교육 외에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청된다. 심각한 수준의 방임은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이 요구되며 사회적 개입도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⁵²⁾

51) Erickson, M. F. & Egeland, B.(2011) Child neglect, J. E. B. Myers (Ed.).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3rd ed.)(pp.103-124), Thousand Oaks, CA: Sage.

52) 정익중,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동광 제107호, 2011, 14-15면.

나. 아동방임 개입기준의 제안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빅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범죄를 예측하는 범죄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율을 줄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을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하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아동방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로 추정되는 사건이 신고되거나 접수되면 아동학대사건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개입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아동방임 판단과 그 개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개입기준이나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동일점수부여방식-아동방임 판단과 개입 가능성 판단

번호	아동방임을 판단하는 요인들	O(1점)	X(0점)
1	사안이 중요한(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의 심각성)?		
2	아동의 연령이 6세 이하인가?		
3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가?		
4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임하였는가?		
5	누범 또는 상습범인가(전과 유무)?		
6	가해자가 계획적이었는가?		
7	진지한 반성이 없는가?		
8	훈육의 목적이 없는가?		
총점	1~2점: 방임의 가능성 미약- 미개입 또는 교육 조치 3~6점: 방임의 가능성 있음- 필요적 수사 / 재량적이고 예방적 개입 7점 이상: 방임의 가능성 높음- 필요적 수사 / 필요적 개입		

<표 3>과 같이 동일점수 부여방식은 아동방임을 판단하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7번 진지한 반성이 없다면 1점,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점수를 산정하여 1~2점이면 방임의 가능성 미약하므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은 하지 않는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적 조치만 한다. 그리고 3~6점이면 방임의 가능성 있어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가고 아동보호기관이 예방적 개입을 할지 여부를 재량 판단한다. 그리고 7점 이상이면 방임의

가능성이 높아 수사하고 아동보호기관이 필요적 개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1번 사안처럼 사안이 중요한가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1회의 방임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나 위험을 발생하였다면 수사와 개입이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임 판단 요소들과의 점수가 3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물론이고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조차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방임 판단 요소들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점수 부여방식은 아동방임 판단 및 개입의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아래 <표 4>와 같이 차등점수 부여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방임으로서 사안이 중요한가?는 2번 사안처럼 아동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는 3점, 7세에서 14세까지는 2점, 15세 이상은 1점의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임 판단요소들간의 점수의 우열은 시민, 학계, 실무자 간의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을 추운 겨울에 집 밖에 방치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7점(3+4 심각), 생명이나 신체에 손상은 없으나 밤에 1시간 이상 방치하였다면 2점(위험), 훈육의 목적으로 1시간 이내에 집밖에 있도록 하였다면 1점(경

<표 4> 차등점수부여방식-아동방임 판단과 개입 가능성 판단

번호	아동방임을 판단하는 요인들	심각 (3점)	위험 (2점)	경미 (1점)
1	사안이 중요한가(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의 심각성)? 단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4점을 추가한다.			
2	아동의 연령이 6세 이하인가?			
3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가?			
4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임하였는가?			
5	누범 또는 상습범인가(전과 유무)?			
6	가해자가 계획적이었는가?			
7	진지한 반성이 없는가?			
8	훈육의 목적이 없는가?			
총점	1~3점: 방임의 가능성 미약- 미개입 또는 교육 조치 4~6점: 방임의 가능성 있음- 필요적 수사 / 재량적이고 예방적 개입 7점 이상: 방임의 가능성 높음- 필요적 수사 / 필요적 개입			

미)로 차등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방임의 지속기간, 전과의 종류와 횟수 등도 시민과 학계 및 실무자들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해당 방임판단 점수의 차별화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방임 판단기준과 개입기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앞으로 시민과 학자 그리고 실무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서 방임행위에 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무엇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인지 그리고 ‘소홀히’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아동방임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아동방임사건인지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방임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방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요청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아동복지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무엇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보호, 양육, 치료 그리고 교육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들의 형벌을 감소하고 행위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방임의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방임 판단기준과 개입기준을 시민과 학자 그리고 실무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여 학대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욱, “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3권 4호, 2020.
-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21권 1호, 2014.
- 권솔지·이경주·김희균, “아동학대 판단척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통향 통권 제59호, 2018.
-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0.
- 길민성, “아동학대범죄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기준에 관한 검토”,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통권 제45호), 2015.
- 성희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4호,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2013.
- 송문호, “보안처분과 형벌 포폴리즘”, 형사법연구 제26권 3호, 2014.
-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2013, 한국법학원.
- 이천현,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7권, 2014.
- 정웅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2권 1호, 2014.
- 정익중,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동광 제107호, 2011.
- 최준혁,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21.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Leaving your child home alone. <http://www.childwelfare>에서 2017. 9. 30. 인용.

- DePanfilis, D. (2006). *Child Neglect: A Guide for Preven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 Erickson, M. F. & Egeland, B.(2011) *Child neglect*, J. E. B. Myers (Ed.).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3rd ed.)(pp.103-124), Thousand Oaks. CA: Sage.
- Erickson, M. F. & Egeland, B.(2002) *Child neglect*, In J. E. B. Myers, L., Berliner, J. Briere, C. T. Hendrix, C. Jenny, & T. A. Rie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rd ed., pp.3-20), Thousand Oaks. CA: Sage.
- Garbarino, J., & Collins, C. C. (1999). *Child neglect: The family with a hole in the middle*. In H. Dubowitz(Ed.), *Neglected children: Research, practice and policy*(pp.1-23), Thousand Oaks. CA: Sage.
- Hildyard & Wolfe(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
- UNICEF. (2012).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 關東辯護士連合會編, 『子どもの虐待-その豫防と救済のための提言-』, 關東辯護士連合會, 1998.

Problems and Remedies for Child Neglect Crime

Kim, Byung Soo*

The regulations for child neglect of the Child Welfare Law is too abstract. Even if there are suspected cases of child neglect, judicial police management and child workers are having difficulty discriminating between cases of child neglect. As a result, it not only fails to effectively protect neglected children, but also makes it difficult to prevent and cope with child negle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more specifically define the types of prohibited acts punishable by criminal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clarity of the criminal statutory stat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hat kind of basic protection, child care, treatment and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penalties for the prohibited acts of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and apply various penal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behavior. In addition to imprisonment and fin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osing penalties if the matter is minor. Standardized manuals should be developed to judge the risk of neglect or accurately determine the state of neglect of the child.

❖ Key words: child neglect, child abuse, principles of clarity, penal populism, development of child abuse manual, the Child Welfare Law

투고일 : 2월 28일 / 심사일 : 3월 27일 / 게재확정일 : 3월 27일

* Professor, Dept. of Police & Security Administration,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Ph.D. in Law

